

##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### □ 제안이유

-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법령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만이 면제 혜택을 받아왔으므로 일반영세민도 이와 형평유지
- 소규모 서민주택의 공급을 원활히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감면혜택 배제
- 경과규정의 적용시기 경과

### □ 주요골자

- 4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용 부동산 분양시 전액 면제
- 최초분양자중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배제 규정 채택

### □ 근거법령

-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
-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

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.

-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 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(참 조)